

영등포구의회
제13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1. 28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 병 옥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(안)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동 주민센터 정원을 현재 현원과 비슷한 수준의 조정 및 행정기구별 업무조정에 따른 직렬, 직급별 정원의 재 책정과
-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하는 기능직렬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시켜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■ 주요내용

- 동 주민센터 정원이 2000년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 책정된 이후로 조정되지 않아 실제 인력수급의 기준으로 활용키 어려워 현재 운영중인 현원을 감안한 정원 재 책정으로 각동 주민센터 인력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
- 행정자치부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』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이 각각 78%이상, 20%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고,

- 구의회사무국 별정9급 속기사는 8년 이상 동일직급에 근속 중이므로 하위직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정8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키고자 함
 - 일반직 9급 근속승진기간 : 7년
 - 2007년 현재 일반직 9급 평균 승진기간 : 2년 ~ 2년 반

■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

< 구 본 청 >

● 일반직

- 현 행 : 668명(4급이상 7명, 5급 26명, 6급 124명, 7급이하 511명)
- 개 정 : 667명(4급이상 7명, 5급 27명, 6급 124명, 7급이하 509명)
- 증 감 : -1명(5급 1명 증원, 7급이하 2명 감원)

● 기능직

- 현 행 : 295명(6급 8명, 7급이하 287명)
- 개 정 : 230명(6급 8명, 7급이하 222명)
- 증 감 : -65명(7급이하 -65명)

< 보 건 소 >

● 일반직 : 변동없음

● 기능직 : 변동없음

< 동 주민센터 >

● 일반직

- 현 행 : 212명(5급 22명, 6급 44명, 7급이하 146명)
- 개 정 : 231명(5급 22명, 6급 44명, 7급이하 165명)
- 증 감 : +19명(7급이하 +19명)

● 기능직

- 현 행 : 없음
- 개 정 : 53명(7급이하 53명)
- 증 감 : +53명(7급이하 53명)

< 구의회사무국 >

● 일반직

- 현 행 : 14명(4급 1명, 5급 2명, 6급 3명, 7급이하 8명)
- 개 정 : 12명(4급 1명, 5급 2명, 6급 3명, 7급이하 6명)
- 증 감 : -2명(7급이하 -2명)
※ 계약직(의원보좌) 7급 2명 정원이 별정직(의원보좌) 6급으로
변경됨에 따라 감축조정

● 기능직 : 변동 없음

■ **관련근거** : 따로붙임

-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0조
(직급별 정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시행규칙
제8조(정원책정기준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0조, (직급별 정원)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 253호) 제8조(정원책정기준)의 규정에 의거하여,
- 구분청 도시디자인과 신설 등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 증원, 7급이하 2명 감소, 기능직 65명이 감소하여 전체 66명이 감소하였으며,
-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.
- 동 주민센터에 일반직 7급 이하 19명, 기능직 53명을 증원하여 고객에게 한발 앞서 서비스 할 수 있는 필수인력으로 72명을 증원하였습니다.

※ 참고사항

우리 구 전체직원 정원이 1,304명이나 현원은 75명이 부족한 1,2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, 내용 중 기능직 53명 증원은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현원으로 배치되어 근무중입니다.

-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으나,
-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면밀한 업무분석과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속에, 조직간 균형있는 정원책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. 28.

보고자 : 김 병 옥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
- 제20조(직급별 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8.31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(정원감축을 제외한다)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

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1995.5.16, 1995.12.28, 1998.8.31, 2005.2.11, 2005.10.20>

1. 시·도 및 특별시 자치구 : 정무직지방공무원, 일반직 4급이상·연구
별정직 4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

2. 시·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: 일반직 5급 이상·연구관·지도관 지방공
무원, 기능직 5급 이상 지방공무원, 별정직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
원의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
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
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중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조
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
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
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설 1995.12.28, 1998.8.31, 2004.12.18, 2005.2.11>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시행규칙(정 원책정기준)

제8조 정원책정 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
정원책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.

② 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
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·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(시장·군수·
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)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
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
있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03.5.1>

④ 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
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·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시·도지사 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5.1>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구 분	총계		구본청		구의회 사무국		보건소		동	
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
총 계	1,304(4)	1,307(4)	969(4)	902(4)	29	27	94	94	212	284
정무직 계	1	1	1	1						
구청장	1	1	1	1						
일반직 계	976(4)	992(4)	667(4)	666(4)	14	12	83	83	212	231
3급	1	1	1	1						
4급	7	7	5	5	1	1	1	1		
5급	60	61	26	27	2	2	10	10	22	22
6급	186(1)	186(1)	124(1)	124(1)	3	3	15	15	44	44
7급	272(2)	274(2)	199(2)	197(2)	4	2	25	25	44	50
8급	309(1)	312(1)	219(1)	218(1)	2	2	23	23	65	69
9급	141	151	93	94	2	2	9	9	37	46
별정직 계	14	13	6	5	8	8				
6급상당	5	5	3	3	2	2				
7급상당	6	5	3	2	3	3				
8급상당	2	3			2	3				
9급상당	1	0			1	0				
기능직 계	313	301	295	230	7	7	11	11	0	53
기능6급	8	8	8	8						
기능7급	18	18	18	18						
기능8급	44	41	42	39			2	2		
기능9급	87	86	81	78	3	3	3	3	0	2
기능10급	156	148	146	87	4	4	6	6	0	51

※ ()는 총계에 포함된 정원이며, 한시정원임